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59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성환・장철민

민병덕 · 김현정 · 최기상

김태년 • 서미화 • 허 영

송옥주 · 신장식 · 김남근

이용우 • 전진숙 • 김 윤

한창민 • 백승아 • 김문수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, 노동조합, 기업,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(NGO)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.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, 특히 노동계의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러나,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'노동계', '근로자 대표', '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'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 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,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 제할 경우,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 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.

이에,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'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'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,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, 정책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).

법률 제 호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30명"을 "32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근로자를 대표하는"을 "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사용자를 대표하는"을 "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"으로 한다.

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	제2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		
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			
명과 행정안전부장관, 고용노동			
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			
교통부장관을 포함한 <u>30명</u> 이	<u>32명</u>		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	③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
람으로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제2호가목</u>		
	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		
	각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.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	2		
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			
가. <u>근로자를 대표하는</u> 사람	가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		
	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		
	<u>받은</u>		
나. <u>사용자를 대표하는</u> 사람	나.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		
	체의 추천을 받은		
다. • 라. (생 략)	다.ㆍ라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⑨ (생 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		